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전충남양계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6. 6. 10.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사후관리 강화

대전충남양계농업협동조합(이하 '대전충남양계농협')의 내규 「채권관리업무규정」 제5조(채권관리원칙) 등에 따르면 채권관리 업무는 실효성과 실익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조합 자산을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전충남양계농협의 2025년 9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 항목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대출금비율은 각각 25.9%, 11.8% 및 13.9%로 전체 농업협동조합 평균인 8.5%, 3.6% 및 4.6%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4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채권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대전충남양계농협은 채권업무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5.8.20. 이사회 의결로 채권관리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채권관리TF(비상설, 3인)를 설치하여 상임이사 직속의 채권감정부를 신용사업본부 직속의 채권팀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채권팀 소속 총인원은 1명으로 이전 채권감정부 인원 2명(팀장1, 과장보1)에 비해 오히려 축소됨에 따라 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조치 및 회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채권매각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업환경 악화 지속시 여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대전충남양계농협은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체채권 등 채권관리 업무분장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하여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연체채권 정리업무 강화

대전충남양계농협 내규 「채권관리업무방법」 제1장 제7절 제1조(관리원칙) 등에 의하면 조합은 정리대상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법적 절차를 요하는 정리대상채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적 절차를 실행하여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충남양계농협의 2025년말 기준 연체율은 13.65%로 전체 농협 평균인 4.46%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조합의 총 연체금액 약 544억의 74.5%인 405억원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으로 파악된다.

반면, 2025년 중 대전충남양계농협의 경공매 신청 등 법적 절차 실행금액은 56억 원으로 조합의 총 연체금액인 544억원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고, 부실채권 매각은 예상가를 의뢰한 16건 중 1건에 그치는 등 연체채권 정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대전충남양계농협은 연체차주의 연체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공매 등 담보물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및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